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55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 : 허 영 · 윤종군 · 추미애

김영호 • 전용기 • 천하람

서영교 • 한민수 • 위성곤

박균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사망하여 궐위된 경우, 또는 탄핵소추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존재함. 이는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국정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정당성과 책임성의 결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자의 임명, 헌법기관 구성, 조

약 체결과 같은 국가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결정은 대통령의 정통성과 국민적 신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권한대행이 제한 없이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공백 기간 중 국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와 견제를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대통령의 직무정지 또는 궐위 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제한) ① 대통령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경우 또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궐위된 경우,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1. 대통령이 단독으로 추천 또는 지명하는 헌법기관의 장 또는 위원 의 지명 또는 임명
 - 2.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에 대한 신규 임명 제청
 - 3. 조약 체결 및 비준 등 대외적 국가 의사의 확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1. 국가 기능의 유지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 외교 · 안보상의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 ③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추천 또는 동

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임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대통령의 직무정지 또
	는 궐위 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제한) ① 대통령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
	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경우 또
	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궐위된
	경우,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
	임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
	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 대통령이 단독으로 추천 또
	는 지명하는 헌법기관의 장
	또는 위원의 지명 또는 임명
	2.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
	자에 대한 신규 임명 제청
	3. 조약 체결 및 비준 등 대외
	적 국가 의사의 확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통
	령 권한대행이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
	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 기능의 유지에 긴급하

 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

 우

- 2. 외교·안보상의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 ③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추천 또는 동의한 공직자에 대해서 는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진 행하여야 하며, 그 임명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 할 수 없다.